

搜查權에 얽힌
苦惱의 證言



박 재 식
(前 서울시장검찰장)

내가 부산에서 경찰서장을 할 때에이나 벌써 35년 전의 일이다. 아간 순시를 마치고 자정 가까이 되어 경찰서로 돌아와 차를 내리는데, 현관 기둥 모퉁이에 어떤 여자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초 순경에게 누구냐고 물어 보았다. 입초는 적이 당황하면서 마치 자신의 허물이라도 변명하듯 “아까부터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저러고 있습니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니 무슨 일로 왔는데?”
“네, K형사를 만나겠다는데 K형사는 지금 서내에 없습디다.”

나는 여인 곁으로 다가갔다. 30쯤 되었을까 싶어 보이는 짧은 여자인데 얼핏 보기에 실성하여 거리를 쏘다니는 걸인으로 여겨졌다. 밤늦게 경찰서 문 앞에서 총을 뎌 순경의 성화도 아랑곳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거머, 한겨울의 밤 추위 속을 그 흔한 쉼타 하나 걸치지 않고 땀구름이 절은 얇은 천의 치마지고 리만을 허술하게 입고 있는 모양새가 그렇게 착각하기에 십상인 여자였다.

여인은 미상불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우선 청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숙직실의 난로가에 앉혀 놓고 사연을 물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애소하는 표정으로 막무가내의 딱한 사정을 가냘픈 목소리로 말하였다.

여인의 남편은 택시 운전사이다. 작년에 교통사고를 내어 6개월의 징역형을 치르고 나왔다. 그것이 흠이 되어 취직을 못하고 애를 먹다가 며칠 전에 어느 택시회사의 보조운전 자리를 얻어 가까스로 취업이 되었다. 그런데 무슨 원수가 진 팔자인지 오늘 낮에 또 사고를 내고 경찰서에 불들려 왔다는 것이다. 양식이 떨어져 아침을 굶고 나간 탓일 거라고 여인은 건조한 눈시울에 잠시 물기를 잡았다. 다행히 2주 정도의 부상이어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담당 형사의 말을 듣고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애원을 했더니, 피해자도 보기에 딱했던지 치료비 따위 따질 염도 없고 무조건 합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담당 형사는 그새 남편을 조사하는 여간에서 전과(지나해의 교통사고) 사실을 밝혀내고 불구속이 어렵겠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검찰청에 지휘를 받으러 갔다는 것이다.

여인의 얘기를 듣고 보니 검사의 지휘 결과는 기다리나마나 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운명의 모진 화대를 받고 있다고 밖에는 하릴없는 이 불쌍한 여인의 호소 앞에서 명색이 경찰서장의 처신은 참으로 따분했다. 마치 우리 경찰이 이 여인을 못살게 굴고 있는 것같은 죄책감마저 드는 것이다. 필경 그녀도 그런 생각으로 마음 속에서 경찰을 원망하고 있는 감새가 분명했다.

불쌍한 여인의 불행

그것은 내가, 검사도 아마 전과 때문에 불구속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너무 기뻐할 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고 실망의 방패막이를 했을 때나, 일어서면서 양식을 팔아 끼니를 잇도록 하라고 얼마간의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 주었을 때의 그녀의 무표정한 반응이 여실히 말해 주고 있었다. 그 무표정의 표정 속에는 고난에 지친 인간의 체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체가 다른 자에 대한 적의(敵意)어린 무관심 같기도 한 태가 비어져 있어, 그것이 어떤 무언의 메시지로 화해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었다. 나는 서장차의 기사를 불러 통금 시간이 지났으니 여인을 집어까지 데려다 주라고 하고, 숙직자에게 담당 형사가 돌아오면 서장실로 보내도록 일러놓고 자리를 떠났다.

이윽고 담당 형사가 노크를 하고 서장실에 들어섰다. 오랜 시간 바깥 추위에 절은 몸의 찬 기운이 내가 앉은 자리에게까지 끼쳐왔다.

“왜 이렇게 늦었나?”
“네, 숙직 검사님이 저녁 식사하러 나가 늦게 돌아오셔서 지휘 받으라고 늦었습니다.”

“밤 늦게 수고가 많았구나. 그래, 어떻게 지휘가 내렸나?”

“네, 구속 지휘를 받고 영장이 나와 방금 집행했습니다.”

“그의 표정이나 말투에는 사건 하나를 단락지은 안도의 빛이 완연했다.

“불구속 지휘는 받을 수 없었던가?”
“네, 전과가 있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장님”

예측은 한 일이지만 혹시나 싶었던 일루의

가 생겼겠느냐?”
그는 대답 대신 시선을 들어 힐끗 한번 나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서장이 별 희미운 소리를 한다는 눈치였다.

“금품 수수가 없었으면 얼마나 따뜻한 일이나. 검사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정황자료까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수사지휘를 받는 일선 형사의 올바른 직무자세가 아니겠는가.”

이왕 내친 김에 좀 더 훈계조의 얘기를 이르러다가 그만 두었다. 나의 말을 경청하기보다 심히 불만스러운 기색을 그의 표정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형사를 내보내고 나서 나의 심사는 몹시 불편했다. 가끔 피해자가 잡아다 준 괴의자를 경찰이 놓쳤다는 신문의 비난 기사를 보았을 때처럼 입맛이 씁쓸했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 직접 상해를 입은 피해자마저 동정을 하고 조건 없이 합의해 준 사건을 경찰이 법의 이름으로 끔뎌 묶어서 처리해 버린 셈이다. 이렇게 공리하면 정작 내가 당한 일처를 분하고 괴심한 생각까지 들었다.

이튿날 아침의 간부회의에서 나는 수사와 장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렇잖아도 서장님께 말씀 드리려고 했습디다만, 그 형사는 밤늦게까지 애를 써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데, 뜻밖에도 서장님의 꾸지람을 듣고 사기가 몹시 떨어져 있습니다.”

수사과장은 항의라도 하는 어세로 대답했다. 강조하기로 이름이 난 수사의 베테랑과 장인데, 나는 잠시 동안 장벽을 만났을 때의 좌절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게 꾸지람으로 들렸다면 내가 말을 잘못한 모양이로구만, 그런데 수사과장은 그 사건이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아도 서장님이 관심을 가지셨다고 해서 조서를 일일이 읽어 봤는데, 아무 하자 없이 제대로 잘 처리되었습니다.”

“왜 사전엔 그 조서를 챙겨 읽지 않았던가요?”

“퇴근 후에 작성된 것이라서 전화 보고만 받고 검찰의 지휘지침(指揮指針)에 따라 구속 품심을 하도록 저가 지시를 했습니다. 교통사고야 뻔한 사건이 아닙니까.”

“뻔한 사건이냐니요. 인신 구속에 관한 일인데,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활까지 걸린 문제인데.”

“사할이 걸렸더라도 그건 경찰이 관여할 주제가 못됩니다. 범죄사실 이외의 정황은 어디까지나 검사나 판사만이 참작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나 책임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는 대답하라는 듯이 잘라 말했다. 그리고는 상해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휘지침”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상해의 정도가 3주 이상의 진단이면 구속, 2주 이하의 경우는 불구속으로 할 수 있는데, 동일 죄목의 전과가 있을 때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며, 교통

사고의 형사 처리도 이에 준한다는 것이다. 듣고서 나는 좀 어처구니없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면 검사도 이 지침에 매여 전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 아냐?”

“아닙니다. 이건 수사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지침이니가 우리 경찰에게는 절대적인 것입디다만, 검사는 고유의 권한이니가 정상에 따라 구속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검사가 무슨 정상을 참작합니까? 직접 사건을 조사하고 당사자를 대하는 수사관이 정상을 더 잘 알 것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형사법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지휘를 받을 때 검사에게 정상을 잘 설명하여 참작이 되도록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건 서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수사과장은 내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의 속내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형사가 검사에게 사사로운 의견 따위를 말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다는 쥐의 만능만능이나 무모한 짓이다. 그런 주제넘은 옹호(擁護)는 검사의 의심을 사거나 비위를 건드려 수사지휘를 도리어 엉뚱한 방향으로 까다롭게 만들기가 일쑤일 뿐이다. 그래서 서류에 기록된 내용 이외의 군더더기는 결코 불이지 않는 것이 지휘를 받는 형사의 금과옥조로 삼는 철칙이다. 말하자면 수사를 하는 경찰은 사건의 실체만을 캐내는 기계일 따름이지 인간적인 진실 따위에 관여하는 것은 직분 밖의 월권이다. 밖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은 그 법을 우(牛)잡는 검사나 법관이 흘리는 눈물을 두고 하는 말이 고, 설불리 형사가 그런 흉내를 냈다가는 도리어 직무유기죄로 최고형을 차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수사경찰은 피도 눈물도 없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중 이런 줄거리의 푸념 섞인 수사과장의 설명을 듣고 난 나는 견딜 수 없는 허탈함에 빠졌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생각의 숨구멍을 막는 어떤 거대한 메커니즘의 중압을 느끼고 무력하게 서 있는 나의 애소한 존재가 가냘프게 만져졌다.

그것은 간밤에 내가 동정했던 그 불쌍한 여인의 초라한 몰골과 다를 것이 없었다. 크나큰 관료주의의 톱니바퀴 속에서 그 메커니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사로운 동정론으로 직무를 다루려고 한 명색이 기관장인 서장의 도가 우선 직속 부하인 형사나 수사과장의 상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었던 것이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한국의 메커니즘은 우리 경찰을 오로지 관료주의의 충실한 노예로 만들어 가족이나 메달라가는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을 無可奈何 재촉시키는 연모 구실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언필칭의 민주경찰을 실현하는 일은 숏테 연목구어(緣木求魚)의 환상적인 시도에 불과한 것이리라.

그리하여 나는 절감했다. 만약 우리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있었다면, 검사가 하는 이른바 그 수사지휘라는 것을 경찰서장인 내가 할 수 있었다면, 간밤의 그 불쌍한 여인의 불행은 반드시 구제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별틀상식

형사배상 명령제도란?

- 형사사건에서 입은 직접적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 -

—— 김 진 (경우회 재정관리처장)

- | | |
|--|--|
| 1. 제도취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피해자 및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제26조) 이 경우 인지의 참부는 요하지 않는다. |
| 2. 근거법령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 6. 배상명령의 선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제31조) |
| 3. 대상범위
상해(형법 제257조 1항), 중상해(형법 제258조 1항, 2항),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1항), 과실치사(형법 제262조), 절도와 강도의 죄(형법 제38장), 사기와 공갈,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 7.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 4. 손해의 범위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 등에 한정되며 위자료는 제외된다. | 8. 소송비용 부담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5. 신청절차 | |

李相斗의 교통상식<44>



H회사 대리 조씨는 평소 성실한 근무자세와 우수한 업무실적으로 직장상사로부터 장래성이 있다는 평가를 들던 유능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뽕소니사고의 주범이 돼 현재 경찰서 구치

타 엄감결에 차를 놔두고 자리를 피하고 만 것. 조씨는 「차를 두고 왔으니 뽕소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끝에 술이 깬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그러나 때는 늦은 뒤였다. 담당경찰관은 “사고현장에 차를 두고 갔어도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 없이 도망가 버렸기 때문

사고현장에 있었어도 사고운전자 아니라고

거짓 진술하였다면 뽕소니에 해당

소에 수감돼 회사에 사직서를 내야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 사연인즉, 조씨는 며칠전 친목 모임에 나갔다가 소주 몇잔을 걸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사람을 치게 됐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조씨는 차에서 내려 구경꾼들과 함께 피해자를 옮겨냈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음주운전이 들끓날 것을 두려워한 조씨는 사람들의 시선이 피해자에 쏠려있는 틈을

에 뽕소니에 해당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4주의 중상을 입어 조씨는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면서까지 합의를 보았지만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

조씨는 당시 구속 될 만큼 술에 만취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도주만 안했다면 결국 구속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워 뽕소니 사고를 자청한 셈이었다.

警友들의 休息處 「사랑방」으로 초대합니다

쉽게 찾아와 정담을 나누며 부담없이 휴식과 오락(바둑, 장기, 컴퓨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원탁



바둑과 장기도 두고, TV를 볼 수 있는 휴식공간



인터넷 검색용 컴퓨터